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024호
- 나. 제 안 자 : 임규호 의원(찬성자 9명)
- 다. 제 안 일 : 2025년 8월 11일
- 라.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음
- 동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 이하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및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속 운용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 균형발전사업의 연속성과 재정지원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금년 12월 31일 기한 만료 예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3. 주요내용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성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안정적인 회계 및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 로 한다.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검토 내용

- 서울시는 강남·북 간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대규모의 균형발전 사업을 자치구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균특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약 1,925억 원에 이르고 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 산 ¹⁾	180,048	155,163	145,914	201,094	192,553
증 감	△33,505	△24,885	△9,249	55,180	△8,541
증 감 륜	△15.7%	△13.8%	△6.0%	37.8%	△4.2%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 〉

세 입	세 출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3. 지방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차입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4. 지방채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1) 2021~2024년: 세출 결산 지출액, 2025년: 예산서 기준(추경반영)

- 현행 조례는 세입·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세입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보조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보조금, 위탁사업비 지원 등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2025년도 군특회계 예산사업(붙임1참조)은 총 66개(약 1,926억 원)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30개, 약 1,380억 원)과 서울시 자체 균형발전 사업(29개, 약 532억 원) 그리고 예비비 등 재무활동(7개, 약 1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군특회계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지역별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존속기한 연장은 현행 조례 제5조2)에 따라 서울시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과 연동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산업, 생활SOC, 교통,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도시·미래산업·창의경제·도시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임

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하 ‘지역균형발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균특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 주로 문화·생활SOC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 체감도 제고에는 효과적이나, 계획의 장기적·전략적 방향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 향후에는 생활밀착형 사업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조망하여 산업·교통·주거·교육 등 전략적 과제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균형있게 포괄하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균특회계가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재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그 동안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던 균특회계 운용 업무가 2024년 7월 균형발전본부(균형발전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총괄하는 소관부서와 회계운용부서 간 일원화가 이루어져 균특회계 운영의 내실화가 기대되는 상황임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특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여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 판단됨
- 다만, 향후에는 산업·교통·주거·교육 등 중장기 균형발전 과제와 생활밀착형 사업을 균형 있게 포괄하여 추진하고, 일원화된 회계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균특회계의 정책적 파급력과 재정 운용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임

붙임1 2025년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목록

□ 2025년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 전체 규모 : 66개 사업, 총 1,926억원

- 국가균특 포괄보조사업(30개) : 1,380억원(71.7%)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포함 사업 등(29개) : 532억원(27.6%)
- 예비비 등 재무활동(7개) : 13억원(0.7%)

※'24년 (59개 사업, 총 1,788억원)

○ 국가균특 포괄보조사업 : 30개 사업, 총 1,380억원 (71.7%)

※국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포괄보조금 579억 포함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국비
국가균특 포괄보조사업 : 30개, 1,380억원 (71.7%)					
1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3,824	2,549
2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보조)	83	25
3			거점형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4,225	231
4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299	80
5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보조)	2,113	980
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39,524	6,333
7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 화도시 조성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기본운영비, 추가운영비)	4,699	2,169
8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9,386	13,572
9	사회취약계층 복지강 화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523	1,015
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11,262	7,440
11	민·관복지협력+네트워 크 구축 및 복지사각 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 사례관리비	3,146	2,097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국비
12	저탄소 도시환경 조성	건물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210	63
13	대기환경 개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1,370	680
14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120	120
15	클린도시 조성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206	103
16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 기반시설 조성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지원	1,950	1,500
17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0,688	5,344
18	시민생활체육 진흥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길음동 중소규모체육센터 건립 지원	400	400
19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상권르네상스 지원	1,302	997
2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주차장 개보수)	9	7
2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주차장 건립)	2,800	2,000
2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주차장 이용보조)	373	292
23	도시생활속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26	20
24	지식정보사회 선도기 반구축	스마트빌리지 조성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3,604	3,604
25	생활주변 녹지확충	생활밀착형 숲 조성	생활밀착형 숲 조성	1,500	750
26		녹지(숲 조성) 보전 강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1,026	513
27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보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4,000	2,000
28			도시바람길숲 조성	5,000	2,500
29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	2,995	423
30	문화와 여가가 흐르는 품격높은 공원운영	중랑가족캠핑장 노후 시설 보수정비	중랑가족캠핑장 노후 시설 보수 정비	350	140
합 계				138,010	(57,947)

○ 서울시 자체 균형발전 사업 : 36개 사업, 총 545억원(28.3%)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국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해당 사업 : 11개, 208억원(10.8%)					
1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건립·조성	강서구문화체육전기복합에너지 충전타운 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사업)	1,444	
2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건립·조성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 복합 문화타운 건립 지원(전환사업)	709	
3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건립·조성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생활soc 복합화 사업지원(전환사업)	202	
4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건립·조성	사람책도서관 기부채납건립 지원 (전환사업)	290	
5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건립·조성	응암정보도서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전환사업)	1,281	
6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건립·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전환사업)	588	
7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건립·조성	태릉어울림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사업)	2,261	
8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영등포구 대림3유수지 체육시설 건립지원	200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5,489	
1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1,080	
11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균형발전 계획수립	서울창조타운(구, 혁신파크) 조성	7,305	
소 계				20,850	
신성장거점사업(균형발전 기반제고) : 8개, 21억원(1.1%)					
1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기본계획 수립	293	
2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왕십리역 복합환승센터 및 지하철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00	

	소관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국비
3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균형발전 계획수립	노해로 문화공간 조성	150	
4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균형발전 계획수립	한전인재개발원 부지 미래산업 허브 조성	300	
5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균형발전 계획수립	취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	50	
6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균형발전 계획수립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기본구상 수립	210	
7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균형발전 계획수립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430	
8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균형발전 계획수립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300	
소 계				2,133	

기타 기반조성 사업 등 : 10개, 302억원 (15.7%)

※전환사업 :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국비 규모만큼 보전함을 원칙)

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육성·지원	서울연극창작센터 유상이관 분납금	806	
2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시설 건립	광진 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 센터 조성(전환사업)	1,170	
3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시설 건립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 리모델링(전환사업)	2,000	
4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도서관 건립 조성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0,648	
5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시설 건립	금천 금나래아트홀 리모델링 (전환사업)	97	
6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시설 건립	동작 사당동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613	
7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시설 건립	송파구민회관 리모델링 지원 (전환사업)	1,000	
8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시설 건립	양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전환사업)	1,500	
9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시설 건립	중구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 (전환사업)	2,000	
10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 반시설 조성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403	
소 계				30,236	

	소관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국비
재무활동 : 7개, 13억원(0.7%)					
1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예비비(균형발전)	예비비(균형발전)	590	
2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일반예산(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	116	
3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 관	보전지출(여성가족실 아 이돌봄담당관)	국고보조금 반환	437	
4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재무활동(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0.7	
5	정원도시국 조경과	재무활동(정원도시국 조경과)	국고보조금 반환	78	
6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재무활동(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국고보조금 반환	207	
7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일반예산(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	0.4	
소 계				1,324	
합 계				54,544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4조(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내용을 수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